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3. 09. 양 순 경 의원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10. 3. 10.

다. 상 정 일 자 : 2010. 3. 16.(제16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양순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각종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10조)

○ 아동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 관련정보제공, 비밀준수의무, 위원실비보상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내지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완식)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시책수립 시행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 아동 ·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구축과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는 개별법령에 따라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 단체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연계성 미흡등으로 폭력사건이 줄어 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 2004년 193,439건 → 2007년 295,825건
성폭력 피해신고현황 2004년 14,089건 → 2007년 15,325건

○ 아동과 여성보호는 여성부의 주요정책사업으로서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시책과도 부합하며 아동과 여성 보호시책을 보다 폭넓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답변자 : 양순경 의원, 사회복지과장)

○ 질의)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김봉수 위원장)

○ 답변) 본 조례안은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음. 또한 국도정시책 종합평가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인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사회복지과장)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